

피해 건축물 응급위험도판정(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피해 건축물 응급위험도판정이란?

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건축물의 경우, 그 후 발생하는 여진 등으로 무너지거나 물건이 떨어지거나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피해를 입은 즉시 응급위험도판정사에 의해 건축물의 피해상황 조사를 실시, 건물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조사는 무료입니다. 재해증명을 위한 피해조사는 아닙니다.



판정결과의 표시방법은?

피해건축물의 조사를 응급위험판정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판정결과는 빨강, 주황, 녹색의 판정스티커를 건물 외부에 부착합니다. 판정된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스티커에 기재된 사항을 따를 것을 권합니다.

応急危険度判定結果 危険 UNSAFE	
◆この建築物に立ち入ることは危険です ◆立ち入る場合は専門家に相談し、応急措置を行った後にして下さい	
建築物名称	注記:
整理番号	判定日時 月 日 午前・午後 時現在
災害対策本部 電話 ー	

(빨강)

応急危険度判定結果 要注意 LIMITED ENTRY	
◆この建築物に立ち入る場合は十分注意して下さい ◆応急的に補強する場合には専門家に相談下さい	
建築物名称	注記:
整理番号	判定日時 月 日 午前・午後 時現在
災害対策本部 電話 ー	

(주황)

応急危険度判定結果 調査済 INSPECTED	
◆この建築物の被災程度は小さいと考えられます ◆建築物は使用可能です	
建築物名称	注記:
整理番号	判定日時 月 日 午前・午後 時現在
災害対策本部 電話 ー	

(녹색)

위험은 그 시설물 출입금지

요주의는 출입시 충분한 주의를 요함

조사완료는 이 시설물은 사용가능함.

응급위험도판정사란?

각 지자체의 지사가 인정한 건축기술자들로써 충분한 훈련을 받은 후 지자체에 등록합니다. 판정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헬멧, 스티커, 팔완장 등을 지참하며, 신분을 증명하는 등록증 등을 휴대합니다. 지진 등으로 인한 시설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응급위험도판정사의 조사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